

2025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 모집 공고 [권역 내 일반형]

권역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기술창업 아이템,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5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 모집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확인 불가능자)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2025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체결 약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 모집공고는 총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오니 모집유형, 지원자격을 꼼꼼히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신청자는 3가지 유형 중 1개 유형으로만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유형 2개 이상 중복 신청시 최종 제출완료 시간이 빠른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 모집 유형 >

권역제한	권역을 고려하여 신청	권역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모집유형	① 권역 내 일반형	② 지역주력산업 연계형	③ 생애최초 청년 예비창업형
모집규모	553개사 내외	110개사 내외	110명 내외
유형별 지원자격	권역 내 예비창업자(주소) 또는 창업기업(소재지) 선발 * 예비창업자 : 주소지 기준 * 창업기업 : 사업장 소재지 기준	대학별 지역주력산업 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생애최초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

* 신청자(기업)는 동 공고문상에 명시된 유형별 지원자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접수하여야 하며, 지원자격 미충족시 선정평가에서 제외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기업 대상 사업화와 성장 지원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 동력 창출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부터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평균 77백만원, 최대 2억원) 및 창업중심대학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 (예비)창업기업 지원 내용(안) >

사업화 자금	창업지원 프로그램
창업 아이템, BM 고도화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교육, 멘토링, 시장진입, 투자유치, 실증·검증, 해외진출, 기관·기업 연계 등*
*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	* 창업중심대학별로 상이하오니 [별첨 3] '대학별 소개자료' 참조

- **협약기간** : 8개월 이내 ('25. 5 ~ 12월 예정)
- **선정규모** : 총 553개사(명) 내외 (대학별 50개사(명) 내외)
- **지원요건** : 신청완료일 기준 ('25. 3. 21.~4. 2.), 동 사업 신청 시 선택한 창업중심대학 소재 권역 해당되는 예비창업자(주소) 및 창업기업(소재지)

< 6개 권역별 광역자치단체, 창업중심대학 구분 >

권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광역자치단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창업중심대학	한양대, 성균관대	강원대	충북대, 한남대, 호서대	전남대, 전북대	대구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2

선정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8개월 이내 ('25.5 ~ '25.12월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과 대학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①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자금 평균 77백만원(최대 2억원) 내외 [붙임1]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 창업 아이템, 선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배정

[선정된 (예비)창업기업의 사업비(사업화자금) 구성(1억원 기준)]

총 사업비 (예시)	정부지원사업비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1억원 (100%)	7,000만원 (70%)	1,000만원 (10%)	2,000만원 (20%)

- 예비창업자는 정부지원사업비 100%로 구성 가능 (자기부담사업비 부담 불필요)
- 창업기업은 자기부담사업비를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협약체결 대상 제외
- 창업기업은 자기부담사업비 중 현금 비중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조정하여 부담 가능 (현금 부담 비율에 따라 현물 비중 축소 가능)
- 현물은 신청자(대표자) 본인과 사업화 수행에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② **대학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유치, 판로 확대, 글로벌 진출 등 창업중심대학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창업중심대학별 세부 프로그램은 대학별 소개자료(별첨 3) 참고

-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창업기업 선정 후, 수요조사를 통해 대학별 지원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지원할 예정

3

신청자격 및 요건

- ※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를 '협약체결 약약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협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창업기업확인서'는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발급까지 10일 내외 소요되는 점 유의

□ **신청자격** :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창업자부터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까지 모두 신청 가능

○ **예비창업자** : 공고일 ('25.3.14. 포함)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 단,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의 '신청자격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창업자로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세부 조건 >

▶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

- 공고일 ('25.3.14. 포함)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협약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 예비창업자로 신청, 이외에는 창업기업으로 신청 필요

* 사업자등록증상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창업기업'으로 신청

○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 신청자격 세부 조건 >

■ **신청가능 업력** : 2018년 3월 15일 ~ 2025년 3월 14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 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 2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 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신청요건** : 권역 내 소재한 주소지 예비창업자 및 사업장소재지 창업기업

< 창업중심대학별 권역 내 일반형 선정규모(안) >

창업중심대학	대학별 선정규모	
	[예비창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 [창업기업] 사업장(본점 기준) 소재지	
한양대학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50개 내외
성균관대학교		50개 내외
호서대학교	[충청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50개 내외
한남대학교		50개 내외
충북대학교		50개 내외
부산대학교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50개 내외
경상국립대학교		50개 내외
전북대학교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50개 내외
전남대학교		50개 내외
강원대학교	[강원권] 강원	50개 내외
대구대학교	[대경권] 대구, 경북	50개 내외

* 공고마감 후, 대학별 경쟁률을 고려하여 최종 553개사 선정 예정

** **예비창업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본점 기준, 지점 및 분점 등은 불가) 해당 권역에 위치한 창업중심대학으로 신청

*** 권역 내 복수의 창업중심대학이 소재한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의 경우 신청자(기업)가 희망하는 대학을 선택하여 신청

◆ '권역 내 일반형' 유형 주요사항

※ '**권역 내 일반형**' 신청자가 타 권역 선택 시 평가 절차 없이 '**탈락**' 처리 예정

① 인천시 소재 창업기업 A는 한양대 또는 성균관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해당기업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1개 대학을 선택하여 사업 신청

② 제주시에 거주 중인 예비창업자 C는 전북대 또는 전남대에 신청하여야 하며, 부산대에 신청하면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탈락' 처리

<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창업기업 신청요건 및 우대사항 >

- (우대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참여기업 중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 모집공고일 '25.3.14. 기준)
- (우대사항) 지역특화 프로젝트 선정확인서를 제출한 창업기업에 한하여 서류평가 면제 → 발표평가를 통해 대학별 최대 12개 기업 우선 선정
- (유의사항) 창업기업 소재지와 지역특화 프로젝트 지역이 다를 경우 지역특화 프로젝트 선정확인서를 발급한 광역자치단체 기준에 해당하는 창업중심대학으로 신청 가능

* (예시) 서울 소재 창업기업이지만, 대전에 위치한 부설연구소, 공장을 통해 대전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충청권의 한남대, 호서대, 충북대로 신청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25.4.2. 16시) 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3회 이상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2025년 중소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단, '25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⑦ 중소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⑩ 2025년 동 사업 창업중심대학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4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5. 3. 14.(금) ~ 4. 2.(수), 16:00까지
- 신청·접수기간** : '25. 3. 21.(금) ~ 4. 2.(수), 16:00까지(16시 정각 마감)

< 유의 사항 >

- ① **반드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 ② 신청자는, **희망하는 1개의 창업중심대학을 선택**
* 해당 대학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③ **동일한 창업아이템으로 신청자를 다르게 하여 복수의 창업중심대학에 신청**이 불가하며, 적발 시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전체 탈락** 처리
-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창업기업)와 신청 창업중심대학의 권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탈락** 처리
- ⑤ 신청 창업중심대학, 사업계획서, 기타 정보 등은 **모집(신청)기간** 중에만 변경 가능(신청마감 '25.4.2, 16시 정각 이후에는 변경 불가)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4]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 총 제출서류 용량 30MB로 제한**

○ 사업계획서 1부 ※ [별첨 1]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작성(그 외 양식 제출 불인정)

○ 기타 제출서류 ※ 해당하는 항목(면제 등)에 대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

검토항목 및 제출서류		주의사항
① 사업신청서 (시스템 내 자동생성)		온라인 신청시 입력
② 창업기업 확인서 (예비창업자는 제외)		[별첨2] 기타제출서류
③ 권역 소재 여부 확인 -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예비창업자 : 주민등록초본(본인 외 타인 정보 마스킹)		
④ 부동산임대업 보유자(해당시) - 사업자등록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서류 평가 면제	• 과학기술전문사관 의무복무를 마친 자 - <u>과학기술전문사관 발급 확인서</u>	
	•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50+) 선정 창업기업 - <u>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참여기업 선정 확인서</u>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 (서류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결과 등 세부사항은 신청 시 선택한 창업중심대학 별도 안내 예정

<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서류평가	➡	② 발표평가	➡	③ 최종선정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로 발표평가 대상자 추천		발표+질의응답 (창업중심대학별 별도안내)		발표평가 고 득점자 순으로 선정
창업중심대학		창업중심대학		창업중심대학, 창업진흥원

※ 요건 및 자격검토는 모든 과정에서 진행되며 요건을 불충족할 경우 탈락 처리
※ 평가단계별 평가점수가 60점에 미달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창업중심대학별 신청·접수 현황에 따라 별도의 평가절차 운영 가능

□ **평가방법**

-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가점 포함)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 서류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서류평가 면제 대상 >

구분	대상자
서류 평가 면제	• 과학기술전문사관 의무복무를 마친 자
	•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50+) 선정 창업기업
	• '24년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팀
	• '24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후속연계 확정기업
	• '24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후속연계 확정기업
	• '24년 창업중심대학 린스타트업 프로그램 우수자(서류면제 대상자)
	• 창업중심대학별 주요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추천·확정 창업기업(대학별로 상이)

< 서류평가 가점 대상 >

구분	대상자	점수
가점 (최대 2점)	· '24년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최우수 판정기업	2점
	· '24년 창업중심대학 린스타트업 프로그램 우수자(서류가점 대상자)	2점

* 면제와 가점은 서류평가에만 반영되며, 과학기술전문사관 의무복무를 마친 자, 지역특화 프로젝트 선정 창업기업을 제외한 면제 및 가점 기업은 창업진흥원에서 별도 확인

**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팀의 경우 팀당 1회 서류평가 면제 부여. 단, 경진대회 진출 아이템과 핵심 요소가 동일해야하며, 팀당 1명만 서류평가 면제 부여 가능

③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신청(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참석 : '예비창업자 → 사업 신청자', '창업기업 → 대표자' 참석이 원칙

** 평가시간 : 20~25분 이내 (발표 10~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청년우대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1985년 3월 15일 이후 출생한 자, 3월 15일 포함) 50% 이상 선정 예정

- '24년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대상 수상팀 및 최우수상 수상팀 (기업)이 신청할 경우 우선 선정

* 단, 수상 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 선정 혜택 부여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신청(대표)자 및 팀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창업중심대학별 선정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안) >

평가항목	세부내용
문제인식	·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와 해결방안(필요성) 등
실현가능성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성장전략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및 지역 기반 성장계획 등
팀(기업) 구성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 최종선정

- 모집유형별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선정 공고

* 선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 확약서 제출'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는 '협약체결 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창업중심대학」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제출기한 내 협약체결 확약서 제출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선정취소를 통해 차순위자를 선정

※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합니다.

※ 제출한 '협약체결 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대해 창업중심대학 또는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선정자의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기업민원 피해신고

-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신청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 (사업자등록) 예정인 당사자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며,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써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 (협약 체결) 불가하며 단, '25년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25년 동 사업 (예비)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은 1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 발급 신청 필요
 - * 창업기업확인시스템 : cert.k-startup.go.kr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신청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 (영업일 기준)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창업중심대학에 신청 가능
- 창업중심대학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 또는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녹화 가능

□ 선정 후 유의사항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 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 (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 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창업기업 확인서를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지 않은 창업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확약서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함
- * 협약체결 확약서 제출기한 :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창업중심대학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과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예비창업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 30일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선정자 (대표자)가 불구속·구속 등으로 기소되어 사업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창업중심대학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이 가능 하여야 함
- *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제재·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예) 협약종료일이 '25년 12월 31일인 경우 창업기업은 '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를 정상 유지하여야 함.(26년 12월 31일 폐업한 경우 유지 의무 미준수 해당)

7 기타사항

□ 문의처

- (시스템)
- (사업)

구분			락처
1			20-1979
			20-2868
			20-2864
2			30-5850
			30-5658
			30-5687
3			40-9763
			40-9928
4			29-8178
5			49-1658
6			19-5526
			19-5217
7		전남대학교	(Tel) 062-530-1970 (Tel) 062-530-5085
8	동남권	부산대학교	(Tel) 051-510-7092 (Tel) 051-510-3023 (Tel) 051-510-3029
9			경상국립대학교
10		대경권	대구대학교
11	강원권	강원대학교	(Tel) 033-250-7644
			(Tel) 033-250-7640
			(Tel) 033-250-7641

붙임 1**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및 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해외 엑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규제애로 해소 법률컨설팅비 등)
여비	창업기업 대표 및 재직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대표,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이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붙임 2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 cert.k-startup.go.kr / 문의처 : 1811-3773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이종	불인정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불인정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창업 시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폐업 3년 까지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불인정 창업 불인정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후 창업 시	-	창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창업 시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폐업 3년 까지	불인정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 불인정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불인정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 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불인정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불인정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불인정	
	이종		창업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신청가능 여부 : "창업여부"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서 위 기준에 해당.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붙임 3**창업사업화 지원제외 대상 업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외 경제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4**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협약이력 적용 사업**

-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등을 합산하여 총 3회 이상 협약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17~'21년), 창업도약패키지 창구프로그램('19~'20년), 창업도약패키지 마중, 정글, 엔업 프로그램('20년) 협약체결 이력은 창업중심대학 협약이력에 미포함

'18년 ~ '24년 지원사업 기준		
① 예비창업패키지	② 초기창업패키지(실험실 특화형 포함)	③ 창업도약패키지
④ 생애최초 청년창업('23, '24)	⑤ 공공기술 창업사업화('23, '24)	⑥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24)
⑦ 창업중심대학 (예비, 초기, 도약기, 레전드50+ ⁺ 실험실 특화형)		



협약이력(총 합계)	'25년 창업중심대학 지원
2회 이하	가능
3회 이상	불가